

요구자료명	도시계획지역 외의 음식점 및 숙박시설의	요구번호
	산지전용 허가대상 및 협의대상	

□ 산지전용 허가대상 및 협의대상

0 허가대상 : 산지관리법제14조제항의 규정에 의거 용도지역상 관리지역일 경우. (농림지역은 제외)

- 0 건축협의대상 :
- ① 1동당 연면적 200㎡(약 60평)이상일 경우
 - ② 고속도로에서 100m이내일 경우
 - ③ 국도에서 50m이내일 경우
- ※ ①,②,③외일 경우는 산지전용허가 대상임.